

제1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0. 3. 30.(화) 16:2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형태근 위 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가. 성원보고

나. 국민의례

다. 개회선언

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
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「2010~2011년도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 지정계획」에 관한 건 (2010-17-068)

○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2010~2011년도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해 「2010~2011년도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 지정계획」을 의결함

○ 주요내용

- 2010~2011년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기존 사업자를 재지정
- 다만, 통신사업자간 합병 등에 따라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 및 요금감면서비스에 대해 각각 4개사, 9개사를 축소 지정

< '10~'11년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 지정계획(안) 내용 >

대상 역무		제공 사업자('10~'11)	'08~'09년 제공사업자와의 비교
유선전화서비스 (시내전화, 시내공중전화, 도서통신)		KT	변동 없음
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	특수번호 전화서비스	KT, SKT 등 서비스 제공 10개 업체	4개사 감소 (KTF 합병, LG데이콤·LG파워콤 합병, SK네트웍스가 SK브로드밴드에 사업 양도)
	선박무선전화	KT	변동 없음
장애인·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		KT, SKT 등 서비스 제공 110개 업체	9개사 감소 (KTF 합병, LG데이콤·LG파워콤 합병, SK네트웍스가 SK브로드밴드에 사업 양도, 리얼텔레콤 사업 폐지, 인터넷 접속사업자 4개 감소)

2) 「방송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」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(2010-17-069)

○ 최재유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2010년도 경제전망에 따라 자산운용의 목표 수익률 및 자산배분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'방송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 일부 개정안'을 의결함

○ 주요내용

- (적정 유동성 규모 산정 분석기간 등) 적정 유동성 규모 산정을 위한 수입과 지출 분석기간을 4년('05년~'08년)에서 5년('05년~'09년)으로 확대
- 적정 유동성 규모를 500억원('09)에서 533억원('10)으로 확대
- (목표 수익률) 경제회복 기초를 반영하여 4.12%('09)에서 4.77%('10)로 상향
- 단기자산의 경우 3.21%에서 3.86%, 중장기자산의 경우 4.39%에서 5.04%로 상향

- (자산 배분기준) 단기자산 23%, 중장기자산 77%('09년과 동일)의 범위에서 자산군별 목표비중 조정
 -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확정금리형 확대(43%→45%), 채권형 축소(30%→25%)
 - 목표수익률 상향에 따라 주식형 비중 확대(4%→7%)
- (대체투자상품 자산배분 한도 신설) 투자자산 다각화를 위하여 대체투자상품의 자산배분 한도를 주식형 상품에 대한 상한비중(7%)으로 설정

3) 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」 일부 개정에 관한 건 (2010-17-070)

- o 최재유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지역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(DMB) 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기간(3년)이 만료('10. 4월)됨에 따라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마련한 '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일부 개정안'을 의결함
 - o 주요내용
 - 지역 지상파 DMB 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차기 고시시점까지 유예 (단서 신설)
 - (개정사유) 수도권 지상파 DMB 및 위성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과 지역 지상파 DMB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고, 민영미디어랩 도입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징수율과 연계된 고시를 통해 정책 효율성 제고 필요
- ※ 수도권 지상파 DMB 사업자 : 기금 징수를 차기고시 시점까지 유예, 위성방송사업자 : 5년간 유예

4)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건 (2010-17-071)

- o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제35조의4(미디어다양성위원회) 제2항에 의거,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을 의결함

<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명단(총 9인) >

성명	성별	소속
오택섭	남	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초빙교수
유의선	남	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
조성호	남	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
김영원	남	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
최선규	남	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
김유정	여	호서대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
이원우	남	서울대 법과대학 교수
우지숙	여	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
함석천	남	서울고등법원 판사

5) 「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정안에 관한 건 (2010-17-072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의5(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)제7항에 의거, 「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정을 의결함

○ 주요내용

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(제7조)

-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
- 임시회의는 방통위 위원장 또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 소집 시,
- 그리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

② 의결(제7조제4항)

-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-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결의 조항 포함

③ 위원의 제척(제9조)

-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의 직무집행 상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,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제척 결정

④ 분과위원회(제11조)

- 직무수행과 관련한 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설치
-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
- 분과위원회 위원은 방통위 위원장이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내·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되, 외부 전문가의 경우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
-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 가능
-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

6) 「시청자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(2010-17-073)

- 김대희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제100조(제재조치 등)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청자 불만 처리 관련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 「시청자 불만 처리 등에 관한 규칙」의 관련 조항 개정을 의결함

○ 주요내용

①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불만처리 종류 보완

- 방송법 제100조의 개정으로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조치 결과에 의거, 제재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짐에 따라, 규칙에도 '과징금 부과 건의' 추가
- 시청자 불만을 처리함에 있어, 제재조치 등을 건의하기에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 '권고' 및 '의견제시'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

②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불만처리 판단기준 마련

-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'시청자 불만 처리시의 판단기준'을 규칙에 명시하여 향후 시청자 불만 처리 관련 심의時 참조

③ 당사자 사전 의견청취 의무화

- 방송법 제100조제5항 등의 취지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각종 명령 및 제재조치 건의에 앞서,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필수적으로 부여하도록 함
- ※ 방송법 제100조(제재조치 등)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7) (주)KT의 IDC 이용자에 대한 전용회선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0-17-074)

- 김대회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피심인 (주)KT(이하 "KT")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후, KT의 이용자[NHN(주)]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함

○ 주요내용

① 위반내용

- KT가 약관상 근거가 없는 특수조건을 NHN에게만 부여하여 일반전용회선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, 이를 근거로 KT 목동 IDC*와 현대정보기술 마북 IDC간 일반 전용회선 제공을 지연한 행위와 NHN의 BGP** 방식 인터넷전용회선 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
- 부당한 이용자 차별 및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[별표3] IV제5호 및 제7호를 위반한 것임

* IDC(Internet Data Center, 집적정보통신시설) :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일반고객의 통신장비 운영·관리를 대행하는 서비스로, 장비 관리를 위한 첨단 설비, 보안 체계, 고속의 인터넷회선 등을 집적하여 고객에 임대·제공

** BGP(Border Gateway Protocol) : 인터넷망간 연결을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로서, 일반적인 인터넷회선은 제공ISP로만 트래픽소통이 가능하나, BGP 인터넷회선은 여러 개의 ISP와 연결하여 이용자가 트래픽소통 경로를 조절 가능

② KT의 의견진술 내용

- 일반전용회선 특수조건은 최소한의 사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, NHN이 합의된 특수조건을 이행치 않아 일반전용회선의 추가 제공을 거부한 것
- 인터넷전용회선 제공거부는 인터넷망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공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, 현재는 제공 준비가 완료되었음
- 시정조치(안)에 금지행위로 적시된 사항을 즉시 중지하고,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므로, 이러한 노력을 참작해 주기 바람

③ 시정조치 내용

-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(금지행위에 대한 조치)제1항제6호, 제9호 및 제10호에 의해 금지행위의 중지,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조치와 각 조치에 대한 이행결과의 보고를 명함

사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일정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기로 함

6. 폐 회 (18:00)